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842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84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소2265330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황정란

변론 종결 2020. 7. 16.

판결 선고 2020. 9.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가소2265330 판결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제1심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으나, 면책 결정의 확정 등 피고 주장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택한다).

## 이 유

### 1. 추완항소의 적법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3.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2. 3. 30.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9. 9.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9.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2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이 사건의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반환'이지만,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사건명을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과 원고의 2020. 5. 25.자 답변서에 기재된 채무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구상금 청구로 보인다).

한편, 을 제1, 2, 3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8. 4. 면책 결정을 받아 2016. 8. 19. 면책 결정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하면759)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피고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의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가해 차량(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주장대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C와 피고 중 누가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고 누가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지(피고가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지), 피해 차량(원고 차량)에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피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인 채권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당우증

판사최정인

판사김현석